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781호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 정선군 조례 제2782호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8
- 정선군 조례 제2783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13
- 정선군 조례 제2784호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21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44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23
- 정선군 규칙 제1345호 정선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4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67회 정선군의회(2020. 09. 22.)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9. 11.) 에서 의결된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81호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2. “최근 3년”이란 결산년도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말한다.

제3조(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출금
 2. 그 밖의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의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같은 회계연도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정선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 ④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조(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통합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 주사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②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정선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으로의 예탁

⑦ 정선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목적 이외의 용도에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⑧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⑨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
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⑪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
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 회계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다. 세입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 시 활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합기금의 계정구분(제4조)

- 통합계정(예수·예탁 활용)과 재정안정화계정(일반회계 전출 활용)

나.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제5조)

재원	용도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제6조)

재원	용도
1. 결산상 경상일반재원의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큰 항목을 선택 적립 4. 기타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 1. 정선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모든 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라. 기금의 운용 심의(제9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마. 회계공무원(10조)

-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담당 주사

제267회 정선군의회(2020. 09. 22.)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9. 11.) 에서 의결된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82호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정선군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

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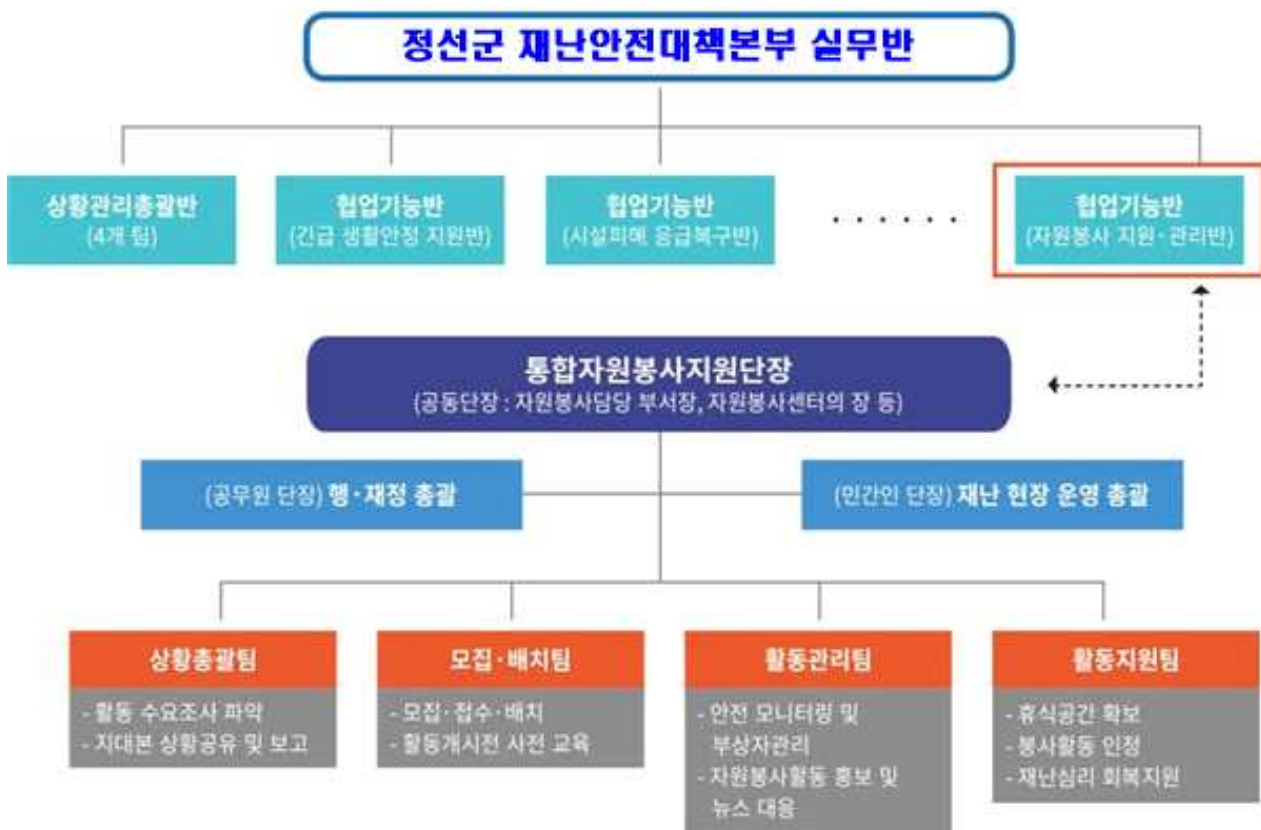
-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예시 >

팀명	직위	담당 사무
단장	공무원 (정선군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민간인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장)	
상황총괄팀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정선군 자원봉사업무 담당(계장)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정선군 자원봉사업무 담당자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모집·배치팀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팀장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단체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지원 또는 정선군 민간단체 대표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비 고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 제안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나.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재난부서 간 협력 체계 마련

□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구성 사항을 규정(제3조 및 제4조)

다. 단장의 임무(제5조)

라. 실무팀의 편성(제6조)

마. 지원단의 설치(제7조)

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제8조)

제267회 정선군의회(2020. 09. 22.)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9. 11.) 에서
의결된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83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선아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
없이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
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또는 증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 또는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
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개별가맹점: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 나.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개인 및 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제13조에 따라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및 모바일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제, 환전 등의 업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 및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2만원권
5. 5만원권

⑤ 제2항에 따라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⑥ 상품권의 명칭, 종류, 권면금액, 발행규모, 기재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정선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 등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판매대행점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정선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4.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정선군(출자·출연기관 포함)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있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정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그 밖에 상품권 환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결제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 소지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⑤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시 군수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조례, 규칙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의 대금을 청구한 경우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맹점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해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품권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개별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④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운영대행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운영대행사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운영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로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협약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다.

제14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발행, 결제, 충전, 환불 등의 자료의 수집, 분석 등을 통한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자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군수로부터 상품권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 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6조(운영위탁 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대행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운영을 게을리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 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운영대행사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운영대행사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가 운영위탁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사유를 문서로써 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운영위탁 협약이 해지될 경우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7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충전을 통한 구매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개인의 경우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가맹점 대표자, 단체·법인 등에는 제3항에 따른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⑥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결제 수수료 등은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제18조(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보안장치)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선아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판매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 제안이유

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7.2.시행)」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정선아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카드형 상품권 도입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카드형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변경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나.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발행 근거 규정

다.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제4조)

- 권면금액 및 상품권 유효기간

라.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제6조)

- 판매대행점 협약 후 그 사항을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마.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제7조, 제10조)

- 가맹점 ‘지정’에서 ‘등록’으로 변경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항을 공개
- 가맹점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품권 취급 제한 가능

바. 사용자 및 가맹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제9조, 제11조)

- 100분의 60이상 구매 후 환불 요구 가능

사. 운영대행사의 위탁, 준수사항, 위탁 해지 등에 관한 사항(제13조~제16조)

아.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제17조)

-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 가능

제267회 정선군의회(2020. 09. 22.)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9. 11.) 에서
의결된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84호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
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4.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5. 택시 브랜드홍보 광고 지원 사업
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절차, 방
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제3조)

다. 재정지원 (제4조)

라. 지원절차 등 (제5조)

규 칙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9. 11.) 에서 의결된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44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협약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협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수불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

을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량, 회수량 등 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협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 등록 현황을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은 운영대행사 또는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충전을 통한 구매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으며,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매시 결제방법은 현금만 가능하다.

③ 군수는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설·추석날 기준 20일 전부터 그날까지 :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

2. 제1호 외의 기간 :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이내

3. 그 밖에 출시기념, 명절·축제, 재난·재해 및 기타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1인당 월 70만원, 연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할인 판매의 경우 구매한도를 1인당 월 100만원 이내로 확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등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지원하는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는 상품권 판매대행 협

약으로 정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 및 판매·환전 등 수수료를 분기별 말일 기준으로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의 환전 등) ① 가맹점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전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기한은 청구된 다음 날까지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전한도액을 승인할 수 있으며, 최대 5천만원까지 승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 또는 기업체, 관공서 등이 대량으로 거래할 때에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5천만원 이내에서 2배까지 상향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종류별로 실물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관이 지난 실물 상품권 및 복사본은 군수에게 요청하여 담당 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훼손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교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상품권을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실물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9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 지정은 상품권 소관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담당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운영현황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치할 장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	발행번호	매 수	발행금액	비 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 계 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인 수 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수불부 ※ 종이상품권만 해당

(단위: 매, 천원)

일자	판매(A)			회수(B)		훼손·불량(C)		유통 잔량 (A-B+C)
	구분	판매금액	매수	구분	매수	구분	매수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운영상황

(년 월)

1. 보유현황

(단위 : 매/천원)

구 분	전월보유누계		금월발행		금월판매		잔 량		비 고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1천원									
5천원									
1만원									
2만원									
5만원									

2. 판매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 판매액	전월까지 판매누계	금월판매액	비 고
계				

3. 환전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총 환전액	전월까지 환전누계	금월환전액	비 고
계				

4. 미환전 잔액 및 통장잔액 비교

(단위 : 천원)

미환전 이월액 (A)	금 월 판매액 (가)	금 월 환전액 (나)	미환전 잔 액 (B=A+가-나)	통장잔액 (C)	차액 (D=B-C)

5. 차액내역(D=E-F-G+H)

(단위 : 천원)

전월 미수금 수납액(E)	금 월 환전 미 지 급 액(F)	이자발생액 (G)	이자 세입 조치액(H)

붙임: 항목별 증명자료 등

년 월 일

작성자(담당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앞쪽)

신청인	① 사업자 등록번호		⑤ 업 종	
	② 상호명 (법인명)		⑥ 전화번호 (사업장)	
			⑦ 연 락 처 (휴대폰번호)	
	③ 대표자		⑧ 생년월일	
	④ 사업장 소재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시장상인회 확인서(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경우)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뒤쪽)

■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수집 및 이용목적	•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정선아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
보유 및 이용기간	위개인정보는 구매 시부터 5년간 보유·이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급·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농협,신협,산림조합,한국조폐공사,정선군청)
제공 목적	•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정선아리랑상품권 취급 및 환전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제공 대상 항목	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은행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본인은 정선아리랑상품권을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 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정선군이 발행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선군과 가맹점 간 협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변경·해지) ① 정선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정선군수는 가맹점이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품권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협약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정선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조례 제10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히행 및 업무협조) ① 정선군수와 가맹점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정선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정선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정선군	가맹점
	상 호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주 소 :
대표자 : 정선군수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 : (서명 또는인)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인서

상 호		전 화 번 호	
영업장소재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귀 업소를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영업장소재지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인서
------	------------------------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현금할인가구매 신청서

정선아리랑상품권 구매 시 본인인증 필수(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카드 지참)
본인인증 불가시 본인인증 불가 사유서 제출 후 상품권 구입 가능

■ 구매 현황

구매금액	원			
권 종	☐ 1천원권	매	☐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2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 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현금구매고객 할인(5~10%) 한도관리*
* 평시 구매한도 : 상품권 권면 기준 월 70만원(종이 및 카드·모바일 합산)
* 특별판매 구매한도 : 상품권 권면 기준 월 100만원(종이 및 카드·모바일 합산)
-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금액
- 3.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구매 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농협, 신한, 산림조합, 한국조폐공사, 정선군청
- 5.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를 상품권 할인 구매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할인가구매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선아리랑상품권 현금할인가구매〔할인을 5%~10%, 월 70만원~100만원(지류 및 카드·모바일 상품권 구매금액합산)〕를 위해 해당 은행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본인은 정선아리랑상품권 환불 시 판매당일(구매한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간의 교환은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다만,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현금할인가구매 한도(지류·카드·모바일 상품권 합산)가 초과될 경우, 구매가 제한됩니다.

20 년 월 일

할인가구매자 : (서명)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핸드폰번호 :

※ 신분증을 지참한 만19세이상 본인에게 판매 가능하며, 대리구매는 불가합니다.

※ 첨부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선군청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 환전 청구 수량 및 금액			
상품권 종류	매 수	금 액	비 고
5만원권			
2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계			

상 호 명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입금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가맹점 환전 관리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 계좌번호, 환전금액

3.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구매 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농협, 신한, 산림조합, 한국조폐공사, 정선군청

5.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는 상품권 환전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환전이 가능 합니다.

정선군청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관리를 위해 해당은행 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

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 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	매 수	금 액	비 고
5만원권			
2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계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인)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처리기한
		14일
☐ 신청자 인적사항		
상 호 명		업 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형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한도 초과 요청		
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50,000천원)		천원
월평균 매출액(※최근 3개월)		천원
☐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주의사항	①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②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권면금액	매 수	폐기방법	비 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정선아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정선아리랑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				처리기한
				7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주소	(우편번호)		
내용	권종 및 매수	☐ 1천원권 매 ☐ 5천원권 매 ☐ 1만원권 매 ☐ 2만원권 매 ☐ 5만원권 매		
	훼손 경위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위와 같이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훼손 상품권에 대한 교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오염·훼손 상품권			
주의사항	일반우편 발송, 그 밖에 부주의에 따른 분실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교환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내용

수집 및 이용목적	· 정선아리랑상품권 교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취급·환전에 관한 업무대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농협,신협,산림조합,한국조폐공사,정선군청)
제공 목적	· 정선아리랑상품권 교환
보유 및 이용기간	사용기간 종료 후 최장 5년
제공 대상 항목	개인 식별정보(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정선아리랑상품권 취급과 환전이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본인은 정선아리랑상품권을 교환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운영현황 인계·인수서

1. 정선아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매)

권면금액		발 행 내 역		판 매 내 역		보 유 내 역	
		매 수	발행액	매 수	판매액	매 수	보유액
계							
1천 원권	종이						
	카드						
	모바일						
5천 원권	종이						
	카드						
	모바일						
1만원권	종이						
	카드						
	모바일						
2만원권	종이						
	카드						
	모바일						
5만원권	종이						
	카드						
	모바일						

※ 카드·모바일 경우 상세 구분 없이 판매 총액만 기재 가능

2. 정선아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원)

환전액	미환전액	이자발생액	통장잔액	비 고

※ 첨부: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임회자	직	성명	(인)

정선군수 귀하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대장 ※ 종이상품권만 해당

(단위: 매, 천원)

인수일	발행번호		발행 매수	발행금액	보관 장소	결재		
						주무관	담 당	과 장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폐기대장 ※ 종이상품권만 해당

(단위: 매)

[illegible]

□ 제안이유

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7.2.시행)」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7.2.시행)」 제정

나.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복·충돌 조항을 정리하고자 함

다. 정선아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품권 도입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자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명 변경

- 당초 :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변경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2조)

다.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제3조)

- 가맹점 ‘지정’ 에서 ‘등록’ 으로 변경

라. 구매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제4조)

- 1인당 구매한도 월 70만원, 연 600만원 이내,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 가능

마. 상품권의 환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 기본 환전한도 가맹점별 월 1천만원 이내
- 환전한도액 초과신청 가능

바. 상품권 훼손 및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0. 09. 11.) 에서 의결된 정선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45호

정선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주·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소속으로 정선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3. 소비자보호단체·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

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재심의)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단속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차량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차량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성명 (남, 여)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표]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의 범위 및 구비서류

근거법령		진술유형	세부유형	구비서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위법성 착오	- 주차가능 구역으로 믿는 데에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식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한 경우 등	의견진술서, 기타 입증자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차량도난	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호	범죄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등
	제2호	도로공사 교통지도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탑재한 경우 등	관련 공문서 등
	제3호	응급환자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의견진술서, 응급진료확인서, 병원 진료확인서
	제4호	구난작업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제5호	장애인 승하차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중증 보행장애인의 승하차를 위해 주차했다는 구체적인 진술 필요	의견진술서, 동행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보행 장애인 배려	중증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자가 주차시설 없는 곳 이용한 경우	의견진술서(장애인증명서), 방문 입증서류
			장애인 주차 가능 국가유공자가 주차시설 없는 곳 이용하는 경우	의견진술서, 국가유공자증, 자동차표지 사본
			현저한 보행장애에 있는 고령환자 진료를 돕고자 주차시설 없는 곳 이용한 경우	의견진술서,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 주차시설 없는 곳에 한하여 장애인 이동수단(보조기구)의 수사를 위한 경우 - 보조기구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자의 긴급요청에 응한 경우	의견진술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내역서, 수리업증명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동불가	- 주행 중 차량고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주차이후에 발생한 차량고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의견진술서, 보험사 긴급출동요청내역서, 차량견인내역서, 차량점검·정비내역서
			차량 운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적인 견인이 어려운 차량(대형버스 등)의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출동장비내역 등)
			교통사고의 현장 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	의견진술서, 사고접수내역서, *조사자인 경우 (공문서-출동내역서 첨부)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긴급상황	- 응급한 진료 및 처치를 위한 경우(불명의 증상으로 긴급을 요한 경우) - 당시 진료했던 의사의 소견으로 응급했던 상황이 입증되는 경우	의견진술서,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 긴급요청에 응해 조치 취한 경우(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긴급 현혈요청 등 응급상황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	의견진술서, 객관적 입증서류
		생계형 화물차량	- 현금수송 등 물품의 승하차를 주업으로 하는 화물차량이며, 작업 중인 경우 - 주차한 이유가 물품 승하차를 위한 것이 입증되면 작업 중인 것으로 봄	의견진술서, 운송장 또는 (이사)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 위반 장소 외의 관계서류 *주정차 단속원 현장확인(출장복명서 등)
		공익목적	공익을 위한 긴급한 업무수행(외교, 군사, 취재)을 위한 경우	관련 공문서
			선거유세기간에 한하여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관위 등록 확인서
		기 타	정선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 의결

□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에 관한 사항(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 제3조)

다.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 등(제4조~제6조)

라. 위원회 운영, 심의방법(제8조, 제9조)

마. 간사, 수당, 회의록 작성(제12조~제14조)

바. 재심의, 심의결과 통지,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제10조, 제11조, 제15조)

사. 운영세칙(안 제16조)